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1155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재웅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박성규, 노순일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51,207,378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51,207,378원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품을 포장하는 종이상자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C에게 종이상자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51,207,378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2005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21. 11. 24. 'C은 원고에게 51,207,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C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다. C과 피고의 주소는 '김포시 E(지번 주소는 김포시 F이다)으로 같은데, C은 위 주소지 등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1,4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21. 12. 20.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인 별지 기재 채권도 C로부터 피고에게로 양도되었다.

라. 한편, C의 현 대표이사는 G(2021. 11. 20. 취임. 1958년생)이고, 전 대표이사는 G의 딸인 H(2020. 10. 16. 취임, 2021. 5. 13. 사임, 1988년생), G의 아들인 I(2021. 5. 13. 취임, 2021. 11. 20. 사임, 1991년생)이며, 피고의 현 대표이사는 H(2021. 3. 31. 취임), 감사는 I이다.

마. C은 별지 기재 채권 양도 당시 적극재산으로 별지 기재 채권 외에 중고 화물차(피고 주장 가액 1,200만 원), 중고 지게차(피고 주장 가액 1,000만 원), 사무실비품 등(피고 주장 약 270만 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51,207,378원, 근로자들 체불임금 439,983,110원, 지방세 체납액 36,055,880원 합계 527,246,368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및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은 별지 기재 채권 양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이 별지 기재 채권 양도 당시 소극재산이 527,246,368원이었음에 반하여 적극재산이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별지 기재 채권과 피고 주장 가액 1,570만 원인 중고 화물차, 지게차 등이 있었는데,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되게 되었다. 따라서 C의 별지 기재 채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위 채권양도로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상태가 심화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C과 피고의 관계, 대표이사의 관계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경제적 사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는, ① 별지 기재 채권 양도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 5억 원 상당의 특허권, 8억 4,800만 원 상당의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으므로 C의 별지 기재 채권 양도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② C이 J으로부터 8억 4,8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게 되자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가 위 대여받은 돈으로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임차인 명의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한 것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① 그러나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사해행위의 판단에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일반 책임재산으로 보아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그 변제가능성이 확실하고 환가가능성도 쉽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특허권은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가치가 5억 5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위 특허권에도 불구하고 C이 위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C의 적극재산으로 산정할 수 없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J으로부터 물품대금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1931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제가능성 및 환가가능성의 불확실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의 C의 J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C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근로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3, 7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과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채무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인 51,207,37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추심을 하기 전이라면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 즉 당해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채권 중 51,207,378원을 양도하고, D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현주

별지 목록

경기도 김포시 F 외 6필지에 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C
과 임대인 D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보증금 250,000,000
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